18.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O 발의일자: 2022년 9월 2일

O 발 의 자 : 정일균 의원, 권기훈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정옥 의원, 김태우 의원, 박소영 의원, 박종필 의원, 육정미 의원, 윤권근 의원, 이성오 의원, 이재화 의원, 전태선 의원, 조경구 의원, 하중환 의원

O 회부일자: 2022년 9월 6일

O 상정일자: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9월 20일) 수정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정일균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(안 제1조~2조)
- O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4조)
- O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(안 제5조)
- O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(안 제6조)
- 청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이규홍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O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,
- O 안 제4조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- O 안 제5조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O 안 제6조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O 안 제7조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,
- O 안 제8조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□ 검토결과

○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,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.

- 전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, 광주시, 경기도, 전남도 등 4개 시·도이며, 2021년도에 제정되었음.
- 대구시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「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의원 발의(대표발의: 김재우 의원)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 있고, 최근에 학업과 취업 등의 사유로 지역의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한 「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을 대구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음.
- O 예술인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개한 지역의 청년 예술인은 2,296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약간 높은 수준에 있지만, 현재 대구시의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4개분야, 11개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의 20% 정도(453명)를 포용하는데 그치고 있음.
- O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에 대한 예술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예술인의 안정적 예술 생태계 정착의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 하겠음.
- 향후, 본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고, 폭넓은 실태조사와 함께, 단순 1회성 행사 지원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청년 예술인의 교육 및 창작공간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재능을 가진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 머물며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분야별 예산 투자계획도 촘촘하게 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서울시의 동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기능이 본 조례안에도 필요해보임. 앞서 황순자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에서 규정한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본 조례안에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?	문화협력위원회에 본 조례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함.

5. 토론요지

O 「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함.

6. 수정안 요지

O「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제9조에 "위원회설치 등"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였음.

7. 심사결과

O 수정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O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O 없음.

10. 첨부서류

O 위원회 수정안 : [붙임1]

[붙임1]

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

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「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(이하 "문화협력위 원회")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문화 협력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 - 1. 청년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
 - 2. 문화예술 경험이 풍부한 청년 예술인
 - 3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

제10조(포상) 및 제11조(시행규칙)은 안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
	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
	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
	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(이하 "위
	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	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	심의한다.
	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
	변경에 관한 사항
	2.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
	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	3.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
	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	③ 시장은 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
	「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」
	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
	위원회(이하 "문화협력위원회")
	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	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
	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문화
	협력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
	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
	위촉하여야 한다.
	1. 청년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

제 정 안	수 정 안
	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
	2. 문화예술 경험이 풍부한 청년
	예술인
	3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예술
	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
	고 인정하는 사람
제9조(포상) 시장은 청년 예술 발전	제10조(안 제9조와 같음.)
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	
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「대구광	
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	
<u>수 있다.</u>	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	제11조(안 제10조와 같음.)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청년"의 범위는 「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청년 예술인"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- 3. 청년 예술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- 4.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「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,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
 - 2.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
 - 3.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 · 전시 지원
 - 4.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
 - 5.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
 - 6. 청년 예술인의 국·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
 - 7.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위탁)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실태조사)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-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「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(이하 "문화협력위원회")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 - 1. 청년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
 - 2. 문화예술 경험이 풍부한 청년 예술인
 - 3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0조(포상) 시장은 청년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「대구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